

『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
발표에 따르면,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
서울시의회 전반에 청렴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
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

서울시의회의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
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
안 제3조, 제4조에는

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해 규정했고,

안 제5조에는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에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

조성 및 활성화 사업, 청렴도 평가와 조사,

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
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
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